

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2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5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(안 제2조 및 제3조)
- 위원의 해촉, 회의 소집·의결 방법 및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위원회 사무처리 등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(안 제8조)
-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조사·연구 의뢰 등(안 제9조 및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지난 2023년 7월 10일부터 기존의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특별법’이라 한다)이 시행되었음. 이후 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음.
- 위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함.
-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, 제66조에서 조례에 위임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이번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2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함.

- 안 제2조~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,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음.
 - 안 제5조~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 회의 소집과 의결 방법 등을 명시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위원회 사무처리와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12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세칙을 규정함.
 -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되,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전 법률인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제정한 「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폐지를 명시함.
-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,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바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- 다만,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설치된 위원회가 종전의 유사한 조직 및 정책과 비교할 때, 그저 형식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내실있는 정책 추진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. 끝.